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2-4번지 일원]

매도인(甲)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5년 12월 \*\*일 온비드(Onbid) 및 우리자산신탁(주) 홈페이지에 공고된 바, 해당 공매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매수인(乙) :

### ■ 공매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

- 아 래 -

#### 제1-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등)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원정(₩-)에 乙에게 매도한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합계 (매매대금)
대지가격	건물가격	소 계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공급가액	지급일자
계약금	일금 원정 (₩-)	
잔 금	일금 원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합 계	일금 원정 (₩-)	VAT 포함

③ 乙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해제)하기로 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④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은 반드시 아래 지정 계좌에 협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구 분	매매대금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우리자산신탁(주)

#### 제1-2조 (유보금)

①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결정된 가처분 사건은 아래와 같다.

결정일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2025.04.15.	부산지방법원 2025카합10138	(주)부광창호	우리자산신탁(주)	금2,479,261,950원
2025.04.29.	부산지방법원 2025카합10159	클라크에프엘(주) 외 2명	우리자산신탁(주)	금2,479,261,950원

② 본 계약에서 “가처분 사건”이라 함은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제1항의 가처분과乙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소유권이전일)까지 甲을 채무자로 하여 추가로 결정(접수)되는 모든 가처분(본안소송, 가처분이의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가처분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포함함)을 말한다.

③ 乙은 위 가처분 사건을 매매대금 및 아래에서 정하는 유보금과는 별도로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해소), 종결하기로 한다. 특히, 가처분 사건 말소(해소)를 위한 가처분이의 및 본안소송 등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사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원상회복 및 소유권상실 절차, 손해배상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乙의 손해에 대해서 甲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함을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단, 乙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소유권이전일)까지 가처분 사건을 말소(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본안소송 또는 가처분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각 가처분 사건의 청구금액(또는 소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원을 甲에게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유보금”이라고 한다.

사건번호	청구금액(또는 소가)	유보금	유보금 산정방법
부산지방법원 2025카합10138	금2,479,261,950원	금3,223,040,535원	청구금액(또는 소가)의 130%
부산지방법원 2025카합10159	금2,479,261,950원	금3,223,040,535원	청구금액(또는 소가)의 130%

※ 상기 표에 기재한 가처분 사건은 현재 결정된 가처분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乙은 추후 결정(접수)되는 모든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유보금 산정방법으로 산정된 유보금을 甲에게 지급해야 함.

④ 乙이 제3항에서 정한 유보금을 매매대금 완납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은 해지(해제)되며, 기납부한 계약금(예금이자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유보금은 반드시 아래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구 분	유보금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우리자산신탁(주)

⑥ 제3항에서 정한 각 가처분 사건의 유보금은 모든 가처분 사건이 종결(종국)되는 날까지 유보하기로 한다.

⑦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甲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법원에 공탁 시 공탁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원리금 등)과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공매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한 민원 또는 권리제한사항 등이 접수되어 甲이 그 비용(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甲이 단독으로 유보금을 집행(사용)하거나 乙에게 유보금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⑧ 제7항과 관련하여 甲에게 예치된 유보금이 부족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족한 금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그 즉시 甲에게 부족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⑨ 각 가처분 사건의 유보금에 대하여 甲은 구분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유로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모든 가처분 사건이 말소(해소) 및 종결(종국)되는 경우, 제7항 등에 따라 甲이 사용하고

남은 유보금만 아래 지정된 乙의 계좌로 지급(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채권자 등 기타 제3자가 乙을 채무자로 하는 보전처분 또는 소송 등이 접수되어 甲이 乙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甲이 사용하고 남은 유보금(법원에 공탁 시 공탁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임)을 공탁하기로 하며, 甲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구 분	매수인 계좌번호	예금주
		매수인 XXX

⑪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하여 매수자는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매매계약 조건 변경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내용확인(제1-2조)	매수인은 제1-2조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	---

## 제2조 (소유권 이전)

- ① 乙이 **제1-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및 제1-2조에서 정한 유보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 ② 소유권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0조에 기재된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 등 일체)**는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乙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 ④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 (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 ① 乙은 공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 ② 본 계약체결 이후에 공매부동산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물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압류, 유치권 등 일체)**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의 부담(책임)으

로 처리하여야 함을 乙은 수인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 제4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
- ④ 본 계약체결 이후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 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

#### 제5조 (제세금 등)

- ① 공매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는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부동산의 전용 및 공용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매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정산된 공매목적 부동산의 모든 관리비(수도, 가스, 전기비 등 포함)를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매도인(당사)에게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매도인(당사)에게 관리비(수도, 가스, 전기비 등 포함) 청구 및 구상권 청구 등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2. 공매부동산에 대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일 경우,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관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요청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선택 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제11조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서 乙이 제1-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및 제1-2조에서 정한 유보금을 완납하였을 때,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주(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고, 그 즉시 관할행정관청에서 납세의무자를 乙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 ③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국유재산 부당이득금 및 변상금은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甲, 이후는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6조 (계약의 해제)

-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 제9조 (기타사항)

- ①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② 공매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발생 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 등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④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0조 (임대차 등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 ① 2024년 12월 13일 기준 공매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및 상가임대차열람 결과, 전입내역 및 임대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공매부동산은 없으나, 2024년 12월 13일 이후로 甲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대차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임대차계약 등은 乙이 전부 승계하여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인도 및 명도) 및 비용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아울러 乙이 매매계약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 완료였으며, 공매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甲에게 청구하는 경우(그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함)에도 그 지급을 전적으로 乙이 책임지고 甲을 면책시켜야 한다.
- ② 2025년 12월 10일 기준 공매부동산에 별지와 같이 권리제한사항이 결정된바, 공매부동산이 관련법에 의거 처분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권리제한사항에 대하여 승계 및 인수, 해소(말소) 등 관련 행정절차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 ③ 공매공고일 전후를 불문하고 공매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영업권,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바 매수자는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였으며, 향후

공매부동산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권리제한사항 해결에 필요한 책임 및 비용 또한 乙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乙은 본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따라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자는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며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 해지, 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요구,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매매계약 조건 변경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내용확인(제10조)

매수인은 제10조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 제11조 (사업계획승인)

① 공매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본 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는 아래 건축주(사업주체)의 지위(권리·의무)가 포함된다. 아울러, 본 계약은 乙이 아래 사업계획승인의 건축주(사업주체) 지위를 현황대로 인수(승계)하여야 하며, 乙은 인허가 사항(용도 또는 사용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공사이행보증금 예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미매입부지 및 국공유지 매입, 기타 부가된 모든 이행의무 등)을 관할관청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허가번호	부산진구청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최초허가일	2022.09.02.
건축주	우리자산신탁(주)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외 268필지
대지면적	13,710.1 m <sup>2</sup>
건축면적(건폐율)	7,614.7698 m <sup>2</sup> (55.5413%)
연면적(용적률)	221,147.3736 m <sup>2</sup> (1,107.433%)

② 乙이 제1-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 및 제1-2조에서 정한 유보금을 완납하는 날에 甲은 공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함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乙에게 제공 및 乙의 명의로 건축주(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甲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받은 乙은 그 즉시,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주(사업주체)의 지위(권리·의무)를 乙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인허가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甲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기로 한다.

③ 본조와 관련하여 인허가에 부수된 이행의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공사이행보증금 예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미매입부지 및 국공유지 매입, 기타 부가된 모든 이행의무 등)는 乙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주(사업주체) 변경이 불가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더라도 甲은 일체의 책임(의무)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를 사유로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해제(해지), 취소, 무효, 매매대금의 감액, 매매대금 납부 기한의 연장,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 조건변경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내용확인(제11조)

매수인은 제11조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① 본 계약에 따른 매수자(대리인 포함,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는 공매 및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원만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당사에 제공 되었는 바, 매수자는 당사가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 ②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연락처 등이며 공매 및 매매계약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며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 후 10년 까지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매수자는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
- ③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매 및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동의  미동의 )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매수인 \_\_\_\_\_ (인)

20\*\*년 \*\*월 \*\*일

매도인(甲)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110111 – 2003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대표이사 김범석(지배인 : 김해진) (인)

매수인(乙) :

매수인은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함

매수인 \_\_\_\_\_ (인)

[별지]

## 공매부동산의 표시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구분	주소	면적 (㎡)	지목/용도	권리제한사항	
				등기목 적	접수일/접수정보/주요등기사항
토지	62-4	55.2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20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8	66.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96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	83.10	대	-	-
토지	62-10	6.30	도로	-	-
토지	62-11	143.10	대	-	-
토지	62-12	89.3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83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3	59.8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46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4	145.10	대	-	-
토지	62-15	79.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66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6	49.60	대	-	-
토지	62-22	78.40	대	-	-
토지	62-23	30.10	대	-	-
토지	62-30	58.8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12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31	82.6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15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32	105.80	대	-	-
토지	62-33	29.80	대	-	-
토지	62-35	69.4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36	43.00	대	-	-
토지	62-37	25.80	대	-	-
토지	62-38	76.00	대	-	-
토지	62-40	33.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24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1	122.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28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2	88.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3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3	111.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65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6	89.3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47	120.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185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51	128.90	대	-	-
토지	62-53	59.5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209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54	18.80	대	-	-
토지	62-55	128.90	대	-	-
토지	62-56	383.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212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58	29.8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81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62	64.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63	127.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85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64	180.5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87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2	118.0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99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3	73.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03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4	72.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07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5	21.50	대	-	-
토지	62-96	63.8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10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7	100.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12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8	28.4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15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99	106.1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94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1	70.40	대	-	-
토지	62-102	56.2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65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3	73.7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70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5	53.5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71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6	53.9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73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7	106.1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74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08	47.30	대	약정/ 금지사	허위의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을때에

				항/환 매특약	는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가처분	2025년 4월 15일 / 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 4월 29일 / 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109 (지분 630/819)	25.46	대	-	-
토지	62-110	63.8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76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11	36.40	대	-	-
토지	62-112	23.10	대	-	-
토지	62-113	73.7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78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14	61.5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79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17	85.3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80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18	18.5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82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24	71.4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85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27	53.90	대	-	-
토지	62-128	47.3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87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29	34.0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55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31	23.1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50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36	85.3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53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39	98.5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55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47	67.10	대	압류	2025년 11월 4일 / 제578758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48	13.2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59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49	163.3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63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0	141.2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70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1	56.2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86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2	41.0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90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3	70.4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92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4	47.3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95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6	51.60	대	압류	2025년 11월 14일 / 제599798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7	30.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01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58	185.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05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60	220.5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09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64	38.3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60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65	73.70	대	–	–
토지	62-166	50.60	대	–	–
토지	62-167	60.5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53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169	325.30	대	–	–
토지	62-384	143.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818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36	125.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437	87.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22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0	53.2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25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1	55.2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61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2	38.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28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3	63.4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91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4	120.0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30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49	70.7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34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50 (지분 504/552)	50.4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38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51	75.00	주차장	–	–
토지	62-464	67.4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4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65	24.10	대	–	–
토지	62-467	181.5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44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70	111.7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92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71	35.4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194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72	65.5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199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73	64.1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206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74	95.2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789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480	27.4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695	82.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90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698	84.3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693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62-699	10.90	대	-	-
토지	62-700	201.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701	58.80	대	-	-
토지	62-708	11.90	도로	-	-
토지	62-709	10.10	도로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712	9.60	도로	-	-
토지	62-713	3.90	도로	-	-
토지	62-714	12.10	도로	-	-
토지	62-716	14.10	도로	-	-
토지	62-717	18.90	도로	-	-
토지	62-720	7.40	대	-	-
토지	62-721	4.20	도로	-	-
토지	62-722	6.40	도로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62-723	7.50	대	-	-
토지	62-724	26.50	대	-	-
토지	721-27	11.00	대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717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21-28	17.00	대	-	-
토지	721-29 (지분 210/270)	21.00	대	-	-
토지	721-32	1.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36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21-52 (지분 2/11)	14.55	대	-	-

토지	721-54	24.00	대	-	-
토지	721-55	40.00	대	-	-
토지	721-56	5.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37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21-58	116.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39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21-67	218.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41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21-174	11.00	대	-	-
토지	721-175	75.00	대	-	-
토지	733-2 (지분 205/260)	20.50	대	-	-
토지	733-3	3.00	대	-	-
토지	734-5 (지분 840/2100)	4.00	대	-	-
토지	734-7	40.00	대	-	-
토지	734-8	99.00	대	-	-
토지	734-10	70.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43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11	63.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45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12	86.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48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13 (지분 60/70)	6.00	대	-	-
토지	734-14	60.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15	56.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16	60.00	대	-	-
토지	734-17	50.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18	63.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5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0	76.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14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1	73.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22	46.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23	86.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24	72.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20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5	83.0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00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6	73.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24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7	108.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25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28	105.00	대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02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4-39	20.00	대	–	–
토지	734-40	50.00	대	–	–
토지	734-41	49.00	대	–	–
토지	734-47	6.00	대	–	–
토지	734-51	33.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68	5.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4-69	9.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5-23 (지분 113/188)	113.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29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5-27	11.00	대	-	-
토지	735-33	144.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5-35	3.00	도로	-	-
토지	735-41	190.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31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6-7	56.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6-8	60.00	대	압류	2025년11월18일/제604933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토지	736-9	73.00	대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토지	736-12	53.00	대	-	-
토지	736-15	23.00	대	-	-
토지	736-16	17.00	대	-	-
토지	736-23	13.00	대	-	-
토지	736-27	106.00	주차장	-	-
토지	735-32 (지분 1/4)	29.75	도로	-	-
토지	735-34	45.00	도로	가처분	2025년4월15일/제1684785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주식회사 부***
				가처분	2025년4월29일/제2024029호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 클***** 주식회사 외 2명
건물	62-4 내제조표진15935호	83.31	주택	-	-
건물	62-9 내제조표91-199호	198.18	근생 및 주택	-	-
건물	62-11 내제조표92-90호	193.96	단독주택	-	-
건물	62-12 내제조표진4037호	50.58	주택	-	-
건물	62-12 내제조표진28881호	84.96	주택	-	-

건물	62-13 내제조표진5763호	29.72	주택	-	-
건물	62-15 내제조표진14959호	122.71	근생 및 단 독주택	-	-
건물	62-22 내제조표92-232호	210.75	주택	-	-
건물	62-30, 62-448 내제조표진29772호	62.82	주택 및 점 포	-	-
건물	62-31, 734-39	48.73	주택	-	-
건물	62-32 내제조표진21922호	114.72	주택	-	-
건물	62-35	33.06	주택	-	-
건물	62-36 내제조표6442호	29.36	주택	-	-
건물	62-41 내제조표4049호	39.28	주택	-	-
건물	62-41 부속조표제4050호	5.82	주택	-	-
건물	62-42 내제조표진30194호	128.94	주택, 여인 숙 및 근생	-	-
건물	62-43 내제대장번호93-489호	328.90	근생 및 단 독주택	-	-
건물	62-47 내제조표5-20제34801호	151.42	주택	-	-
건물	62-51 내제조표4045호	55.64	주택	-	-
건물	62-51 부속조표	14.31	주택	-	-
건물	62-56	693.58	근생	-	-
건물	62-58, 721-55 내제조표진7204호	33.06	주택	-	-
건물	62-62	40.81	단독주택	-	-
건물	62-63	227.56	주택 및 근 생	-	-
건물	62-64 내제대장번호94-337호	194.80	단독주택	-	-
건물	62-91 내제조표10958호	28.27	주택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177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건물	62-91 내제조표진14902호	9.92	주택	압류	2025년11월14일/제599181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건물	62-92 내제조표진19214호	72.73	근생	-	-
건물	62-93 내제조표진14080호	30.74	주택	-	-
건물	62-94 내제조표진1508호	17.85	주택	-	-
건물	62-94 부속 조표진1519호	7.93	주택	-	-
건물	62-96, 736-15 내제5-24제30887호	96.85	주택	-	-
건물	62-97 내제조표61297호	123.75	주택	-	-
건물	62-98 내제조표진15372호	23.14	주택	-	-
건물	62-99 내제조표진28433호	127.81	점포 및 주 택	-	-
건물	62-102	109.20	근생 및 단 독주택	-	-
건물	62-103	181.17	근생 및 단 독주택	-	-
건물	62-105 내제대장번호94-542호	92.28	근생 및 단 독주택	-	-
건물	62-106 내제조표진25833호	78.39	주택 및 점 포	-	-
건물	62-107 내제조표진23965호	114.06	주택 및 점 포	-	-
건물	62-108 제3호내제조표2878호	52.83	근생 및 주 택	-	-
건물	62-110 내제조표진30151호	74.55	주택	-	-
건물	62-113 내제조표진14794호	79.35	주택	-	-
건물	62-114 내제조표100258호	42.98	주택	-	-
건물	62-117 내제조표진16054호	49.52	주택	-	-

건물	62-139 내제조표진11086호	29.55	주택	-	-
건물	62-147 내제조표85-4457호	112.62	주택	-	-
건물	62-149 내제조표진8973호	31.74	주택	-	-
건물	62-150 내제조표84-206호	54.61	숙박시설 (여인숙)	-	-
건물	62-150 내제조표84-207호	14.53	주택	-	-
건물	62-150 내제조표진9384호	32.07	주택	-	-
건물	62-150 내제조표진9385호	11.74	주택	-	-
건물	62-151 내제조표진15564호	28.10	주택	-	-
건물	62-152 내제조표진13525호	29.75	주택 및 점포	-	-
건물	62-153 내제조표진13789호	23.14	주택	-	-
건물	62-156 내제조표13411호	29.75	주택	-	-
건물	62-157 내제조표5-20제31077호	42.98	주택 및 점포	-	-
건물	62-158 내제조표30056호	120.66	주택 및 여인숙	-	-
건물	62-158 내제조표57144호	75.70	점포 및 주택	-	-
건물	62-160 내제조표진30004호	92.56	주택	-	-
건물	62-160 내제조표55968호	55.77	주택 및 점포	-	-
건물	62-164, 62-699 내제조표진18592호	92.56	주택 및 점포	-	-
건물	62-169 내제조표진4051호	37.55	주택	-	-
건물	62-169 조표진4052호	16.07	공장	-	-
건물	62-169 내제조표진4059호	18.55	주택	-	-
건물	62-384 내제조표91-10호	318.81	단독주택 및 대피소	-	-
건물	62-436, 736-7 내제대장번호94-316호	211.98	단독주택	-	-
건물	62-437 내제조표91-807호	188.04	단독주택	-	-
건물	62-440	156.00	단독주택, 근생	-	-
건물	62-441 내제조표진12089호	30.28	주택	-	-
건물	62-443, 736-12 내제조표87-497호	169.93	근생 및 주택	-	-
건물	62-444, 736-16 내제조표9078호	47.93	주택	-	-
건물	62-467 내제조표5-20제30365호	119.34	점포 및 여인숙	-	-
건물	62-470 내제조표진2722호	36.69	주택	-	-
건물	62-471 내제조표85-7280호	46.36	주택	-	-
건물	62-474 내제조표진16974호	130.58	주택 및 여인숙	-	-
건물	62-480 내제조표진13406호	33.06	주택	-	-
건물	62-698	78.75	근생	-	-
건물	62-700 내제조표진10750호	23.14	주택	-	-
건물	62-700 내제조표진28432호	45.42	주택	-	-
건물	721-28, 721-38 내제조표진9359호	19.84	주택	-	-
건물	721-58 내제조표진25989호	265.89	주택 및 점포여관	-	-
건물	721-67 내제조표14905호	154.93	주택	-	-
건물	721-67 내제조표55973호	300.16	점포, 주택, 숙박시설	-	-

			설		
건물	734-8 내제조표진1390호	43.70	주택	-	-
건물	734-10 내제조표진14795호	26.45	주택	-	-
건물	734-11	174.69	단독주택	-	-
건물	734-12 내제조표진15487호	44.63	주택	-	-
건물	734-14 내제조표1387호	34.91	주택	-	-
건물	734-15	90.21	단독주택	-	-
건물	734-16	86.25	단독주택	-	-
건물	734-17	37.36	주택	-	-
건물	734-18	123.96	근생, 숙박 시설	-	-
건물	734-20 내제조표진18138호	79.34	주택	-	-
건물	734-21	40.04	주택	-	-
건물	734-24 내제조표1377호	38.19	주택	-	-
건물	734-25	131.72	근생	-	-
건물	734-26	36.36	주택	-	-
건물	734-27 내제조표5-20제39510호	185.13	주택 및 점 포	-	-
건물	734-28 내제조표진17766호	221.30	주택 및 근 생	-	-
건물	734-40, 734-47 ※ 신탁등기 이후 건축물 멸실되어 등기 폐쇄	70.07	단독주택	-	-
건물	735-23 내제조표진19135호	159.34	주택	-	-
건물	735-33	348.24	근생, 업무 시설, 주택	-	-
건물	735-41 내제조표86-81호	662.34	숙박시설, 근생	-	-
건물	736-9	24.07	주택	-	-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201호	18.96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 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 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 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04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202호	21.9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 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 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 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06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203호	20.40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 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 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 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08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204호	24.3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10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301호	18.96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12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302호	21.9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14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303호	20.40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16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304호	24.3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18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401호	18.96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20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402호	21.9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21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403호	20.40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24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404호	24.3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27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501호	18.96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29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502호	21.9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503호	20.40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3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504호	24.32	다세대주택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4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601호	25.00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6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602호	21.16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7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603호	24.23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39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701호	29.86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41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702호	29.92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42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703호	29.95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45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9 이룸하우스 801호	46.39	오피스텔	약정/ 금지사 항/환 매특약	21.12.01. 제155274호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해야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압류	2025년11월4일/제578847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2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698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202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06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203호	22.90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08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204호	15.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1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205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16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3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14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302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18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303호	22.90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20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304호	15.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23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305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25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4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28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402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47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403호	22.90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57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404호	15.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59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405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60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5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62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502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66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503호	22.90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67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5.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699호

건물	50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505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79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6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81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602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83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603호	22.90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86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604호	15.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89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605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91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7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94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702호	28.77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797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703호	28.58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01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704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04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8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07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802호	28.77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10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803호	28.58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13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804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14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9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17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902호	28.77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19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903호	28.58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22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904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25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001호	17.76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27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002호	28.77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30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003호	28.58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32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004호	26.11	오피스텔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341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101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37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102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40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103호	19.87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42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104호	16.22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46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1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49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2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514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3호	19.87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53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4호	16.22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55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5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58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206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1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1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3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2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4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3호	19.87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63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4호	16.22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72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5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695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306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70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1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72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2호	13.99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5918766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3호	19.87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780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4호	16.22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789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5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798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집합 건물	62-162외 2필지 삼오골든루체 1406호	13.51	다세대주택	압류	2025년11월11일/제5918827호 권리자 부산진구(부산광역시)

※ 乙은 반드시 공매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토지/건축물대장,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권리제한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였으며, 乙이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권리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내용확인(별지)	매수인은 별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	-----------------------------------